

##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기준일 : 2022년 9월 5일

파인트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이하 "회사"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 제6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 I.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아래의 정보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에 대한 총액과 증권에 대한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아래의 정보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 II.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① 회사는 하기 정보교류대상 차단정보를 생성하는 부서 등을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으로 설정하였으며,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부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투자운용본부(*)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 항 각 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고유재산운용본부	고유재산이 투자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 (단, 시딩투자 제외)

-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기업금융업무)에는 투자운용본부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으로 구분됨

- ②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에 대하여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의 분리, 관련 정보교류금지 등 정보차단벽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내부통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방법을 대체하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음.

##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음

#### I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1.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등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 3 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특정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등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등과 거래하는 행위
3. 특정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등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회사가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 등과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
5.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준법감시인이 판단한 거래

##### ▶ 대응방안

1. 회사와 투자자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정보교류차단 통제 임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함
2.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거래유형 별로 거래중지, 투자자에게 해당 사실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V.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 ▶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 : 준법감시인
- ▶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 : 준법감시팀